

[기획연재]
공익인권활동(2)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소개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년 8월 발족한 연구회이다. 본 연구회는 활동가, 연구자, 국내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활동, 사업활동, 자문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5인과 연구자 및 활동가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모임의 취지

연구회를 처음 제안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변호사는 당시 학자, 법조인, 활동가가 함께 하는 '탈시설정책위원회'와 '장애인법연구회'를 경험하며 성소수자 인권분야에서도 이와 같이 연구와 실무가 결합할 수 있는 모임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희망을 만드는 법(약칭 희망법)' 변호사 등에게 모임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연구와 인권 활동을 지속해오던 법학연구자와 활동가가 함께 결합하여 현재의 연구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의 약자이다. SOGI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을 의미한다.

연구회의 명칭으로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고 있던 성소수자나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대신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을 사용하였다. 성적지향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감정적·낭만적·성적 끌림과 친밀함·성적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등의 성적지향이 있다. 성별정체성은 성별(gender)에 대한 내적·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자신을 남성, 여성, 혹은 그 외의 다른 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사회가 설정하고 있는 젠더관념과 부합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가시적·비가시적 차별과 편견에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성소수자라고 부르며, 그 중 전형화 된 그룹으로서 LGBT가 들어진다. 그러나 LGBT 외에도 다양한 정체성이 있으며, 이는 단지 일부 소수집단의 문제가 아닌, 이성애자나 비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인간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자기정체성으로서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문제이다. 또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체성을 포함한 여타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명확히 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하나의 예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나 간성(Intersex)에 대해 논의할 때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분리된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현재 사회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이해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이상의 점에서 비록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할지라도, 다른 용어가 아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채택하였다. 나아가, 이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비단 소송 대응이나 법률 자문이라는 소극적 의미에 한정되지 않고 정책적 제안이나 입법운동을 비롯한 보다 넓은 의미의 적극적인 현실참여와 변화를 위한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연구회가 아닌 법·정책연구회로 이름 붙이게 되었다.

2. 활동 경과

(1) 연구 활동과 공유

내부 공부모임을 비롯하여 좌담회, 콜로키움, 공동세미나와 세미나 참석과 같은 연구활동이 있다.

공부모임은 학술논문이나 판결문을 중심으로 각 구성원들이 선정하여 제안하고 돌아가면서 발제를 한다. 국내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학논문과 판결문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대부분 숙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부의 자료들은 해외자료가 많았으며,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과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담긴 활동가가이드, 혐오발언과 관련한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문, 미국 동성혼 관련 주요 판례, 트랜스젠더 의료가이드라인과 외과수술 및 생식능력과 관련한 해외의 주요 결정문 등을 번역 혹은 정리하고, 핵심 논점과 국내 논의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한다. 이러한 공부모임은 각 구성원들의 지적 호기심에 기하기도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현안이나 연구회가 진행하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연구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대외활동으로서 세미나, 콜로키움 등을 단독으로 주최하거나 혹은 관련 단체 및 학회와 공동주최하고 있다. 먼저, 2011년 9월 말 첫 활동으로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타니구치 히로유키 교수(타카오카 법과대학)가 동아시아법과사회 학술대회(EALS)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참에, 그를 초청하여 “LGBTI 관련 법제도와 현황: 한일 간 LGBTI 관련 법제도와 사회 상황의 공유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좌담회는 본 연구회가 결성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공동 주최하였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적 이슈와 주요 사건에 대해 발표·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012년 10월 법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공동학술대회 “2012년, 한국의 성적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에서 참석, 발표하게 되면서 특히 법조계에 대해 연구회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3년 9월 <당연한 결혼식> 기획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함께 “‘동성결합’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동성결합’ 인정과 관련된 소송이 가지는 법률적, 운동적 의미와 전략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연구회는 연구활동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현재 주목해야 하는 주요 현안들을 분석하며, 앞으로 논의가 진척되어야 할 분야에 화두를 던지기 위하여 2013년 중반부터 「SOGI 콜로키움」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6월 29일 제1회 콜로키움은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허가한 서울서부지방

법원 결정을 중심으로"였다. 이는 2012년부터 준비해오던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에 대한 기획신청과 허가결정에서 다루어진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이자, 법조·법학계에 알리는 자리였다. 제2회 콜로키움은 2013년 8월 20일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으로, 동성결합 제도에 관해 국제사회 및 해외각국에서 논의·발전되어온 법적 쟁점과 국내 논의를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제도화 가능성·방법론을 비롯하여 그 의미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논의는 커밍아웃한 국내 동성애자 감독의 공개 결혼식 및 헌법소원 취지 공표로 인해 현안으로 떠오른 동성결합 논의로 곧 이어졌다.

(2) 프로젝트 활동

201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두 가지의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먼저 2012년 7월부터 6개월간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신청을 위한 연구와 신청자료를 꾸리는 데 매진하였다. 현재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의 변경은 법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통해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6월 대법원의 허가결정 이후 제정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담당 판사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정규칙의 형식을 하고 있음에도 동 예규는 사실상 개별 신청사건마다 대부분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국제사회의 흐름 및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특히 성전환남성(Female-to-Male,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한 외부성기 마련 요건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의료적 위험도와 경제적 어려움이 결부되어 더욱 가혹한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었다.

이에 연구회의 변호사들이 성전환남성 5인을 대리하여 2012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였으며, 6개월 동안 연관되는 해외 각국의 판례문, 유엔과 유럽평의회 결의문과 보고서 수집·번역, 기본권 침해 사실과 신청인의 사정을 포함한 서면을 작성하고 국내 법학교수·의료인과 세계성전환자보건전문가 협회의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 예규 개정까지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012년 3월 5인 모두 허가결정을 받았다. 1심에서의 결정인 만큼 기존의 예규의 변경으로는 아직 이어지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이 결정이

지속적으로 그 의미를 가지기 위한 활동과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성별정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수십명의 성전환남성들의 신청을 이끌어 냈으며, 이는 2013년 11월 19일 본 연구회의 조사·연구를 일부반영한 동 법원 성별정정허가 결정이유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2012년 6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로부터 「LGBTI 커뮤니티의 사회적 욕구조사」 연구용역을 받아 2014년 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연구회에서 다루고 있는 법·정책의 방향설정도 각 개인들이 느끼고 있는 차별과 불편, 그리고 나아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어떠한 사회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연구회의 구성원들이 고민하는 법·정책의 내용적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판단하여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회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간성)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포커스집단인터뷰, 심층인터뷰,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사회의 LGBTI를 아우르는 조사로서는 최초이자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조사의 막바지에 와 있으며 내년 초에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의 현실과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인권활동뿐만 아니라 법·정책적 청사진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문과 논평

연구회는 자문 혹은 논평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을 지원하거나 사회에 대하여 의견을 내기도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이후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 상담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성별정체성 및 사회생활상의 성별과 신분증상 성별이 불일치하여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기준을 거쳐 들고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당사자들에게 자기 권리 찾기의 가능성을 밝힌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해외에 난민신청을 한 한국인 트랜스젠더의 요청으로 국내 법적·현실적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국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법원에 성별정정 신청을 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작성방법에 대한 설명회도 두 차례 진행하였다. 한편, 동성애자 청소년의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사건에 대한 학교 측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3. 최초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전문가의 모임으로서

본 연구회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라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모인 법·정책전문가 모임이자, 성소수자 개개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연구와 행동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구성원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상, 방법, 방향에 대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다를 것이며,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다. 연구회에서의 논의는 각 구성원들의 연구와 활동에 반영되거나 영향을 미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연구회의 장기적인 목표나 운영방안, 구성원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서 점차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회는 느슨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좋은 국내외 논문이나 새로운 보고서, 이슈와 사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며, 때로는 요약·정리한 것을 브리핑하기도 한다. 각자 구축하고 있는 학술논문과 관례문에서 서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요청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글을 돌려 시간이 나는 한도 내에서 서로 검토해주기도 한다. 프로젝트나 세미나 참석·개최 등도 한 구성원의 제안과 나머지 구성원들의 동의로 진행한다.

약 2주에 한 번씩 각자의 업무 후 밤시간에 모여 연구와 회의를 하고 있으며, 세미나 개최 등 운영비용은 구성원들이 월2만원씩 회비를 걷은 것으로 충당하고 있다. 열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회가 지속되는 이유는 이 주제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그 원동력이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관련한 법적 사안에 대한 연구는 그 바닥이 깊다. 국내에 연구가 미진한 만큼 연구가 필요한 주제는 무수히 많고, 그것은 때론 학제적 연구를 넘어서서 자신이 간혀 있는 인식의 한계를 깨닫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시에 이 주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개개인의 인생 전반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우리들의 활동을 발판삼아 앞으로 국내에서 더 깊은 연구와 더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매개로 보편적 인권실현의 화두를 던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